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84
----------	------

제출일자 : 2017.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군수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법령에 근거 없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법률에 근거 없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 규정인 제14조 제3항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제75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3. 10. ~ 2017. 3. 2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손해배상) ①·② (생략)</p> <p>③ <u>군수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p>	<p>제14조(손해배상)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삭 제></p>

참고 1

관계법령(발췌)

□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